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처분근거 마련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976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처분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Ⅲ. 검토의견

1.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 처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생 략)</u> <u>7. · 8. (생 략)</u> <u>② (생 략)</u> <u><신 설></u> <u>③ (생 략)</u>	<u>6.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u> <u>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u> <u>6의2. (현행 제6호와 같음)</u> <u>7. · 8. (현행과 같음)</u> <u>② (현행과 같음)</u> <u>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u> <u>사는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전</u> <u>·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u> <u>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아</u> <u>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u> <u>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	--

나. 검토의견

□ 2025년 기준 전국 국가관리무역항¹⁾ 내에 미운항선박은 총 247척으로, 이 중 216척(87%)은 6개월 이상의 장기미운항 선박²⁾이며, 장기미운항 선박 216척 중 17척은 무단으로 항만에 방치되어 있어 항만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위협과 선박의 잔존유 유출 우려 등의 환경적 위험 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2]

구분	항만명
1. 국가관리무역항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목호항
2. 지방관리무역항 -해당 지자체 관할(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2) 계선 신고(6개월 이상 미운항) 68척, 계선 미신고(6개월 이상 미운항) 121척, 방치선박(연락두절) 17척, 감수보존선박 10척

< 국가관리무역항 내 장기미운항선박 현황 >

구분	계	계선 신고 선박		계선 미신고 선박			(법원) 감수 보존 선박 (C)
		6개월 이상 미운항	6개월 미만 미운항	6개월 이상 미운항 (A)	6개월 미만 미운항	방치 선박 (연락두절) (B)	
부산	117	25	5	59	15	6	7
인천	21	11	1	9	-	-	-
여수	18	-	-	14	4	-	-
마산	11	2	-	8	-	1	-
울산	36	13	3	10	1	8	1
동해	3	3	-	-	-	-	-
군산	17	14	-	3	-	-	-
목포	20	-	-	17	1	-	2
포항	1	-	-	-	-	1	-
평택	3	-	-	1	1	1	-
대산	-	-	-	-	-	-	-
계	247	68	9	121	22	17	10

자료 : 해양수산부

*장기계류선박(A) : 선박 검사기관에 계선사유서*는 제출하였으나, 무역항 관리청에는 계선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미운항 중인 선박

**방치선박(B) : 계선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계선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항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으로, 대부분 고위험선박에 해당

***감수보존선박(C) :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 전 감수·보존 절차 중인 선박으로 민사상 절차에 따라 폐선 등 절차 진행 중

※ 계선사유서 : 「선박안전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선박등록증서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계선사유서를 선박검사기관에 제출해야함

※ 계선신고 : 「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총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무역항에 계선시 계선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계선신고를 해야함

- 2024년 9월 부산항 장기계류선박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 등에서 해당 선박의 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 마련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개정안 관련 경위 및 현황 >

□ 추진 경위

- '24년 부산항 장기계류선박의 기름유출사고 이후 언론 등에서 해당선박에 대한 법적 처리근거 부재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

□ 장기미운항선박 현황('25.8 기준)

- 전국 국가관리무역항 내에 미운항선박은 총 247척이며, 이 중 216척(87%)이 장기미운항선박이고, 장기미운항선박 216척 중 17척이 무단으로 항만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임

□ 해수부 장기미운항선박 관리대책('25.7)

- 해수부는 장기미운항선박 처리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해 ¹⁾자진 폐선유도, ²⁾선박수리(부산항 10척('24~'25), 울산항2척('25))등의 성과를 올렸으나,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선주가 선박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인 집행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선박 처리에 애로 호소

자료 : 해양수산부

- 선박을 항만시설에 계선하려는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³⁾에 따른 계선신고와,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⁴⁾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선신고를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박계선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繫船)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의 계선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계선 신고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항만법」

하지 않고 방치하는 선박의 경우 대부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현행법에 따른 계선신고 제도 비교 >

구분	근거	종류	장소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법」 제41조	선박 정박· 접안, 부지 임대 등	모든 항만 구역	사용료 규정에 따른 입출항료, 정박·접안료
계선 신고	「선박입출항법」 제7조	선박 계선	계선 구역	사용료 중 계선료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무단 사용자에 대하여 선주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선박 등에 대한 처분 명령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여 방치된 선박의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한 실정임.

참고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을 받고 이후 방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⁵⁾에 따라 제83조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5) 「항만법」

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선박의 계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선박의 처리와 관련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계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⁶⁾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선신고의 미이행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관리청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⁷⁾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⁸⁾, 선박 소유주가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규정이 없음.

또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관리청은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고,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⁹⁾, 동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물에는 운항할 수 없는 폐선만 해당¹⁰⁾하여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계선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선박의 경우 대부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

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역시설을 반복적,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0) 해양에서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항행장애물’(航行障礙物)로 정하고 있으며, 항행장애물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좌초되고 있는 선박 등으로 운항이 가능한 방치 선박은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있음(해양수산부 의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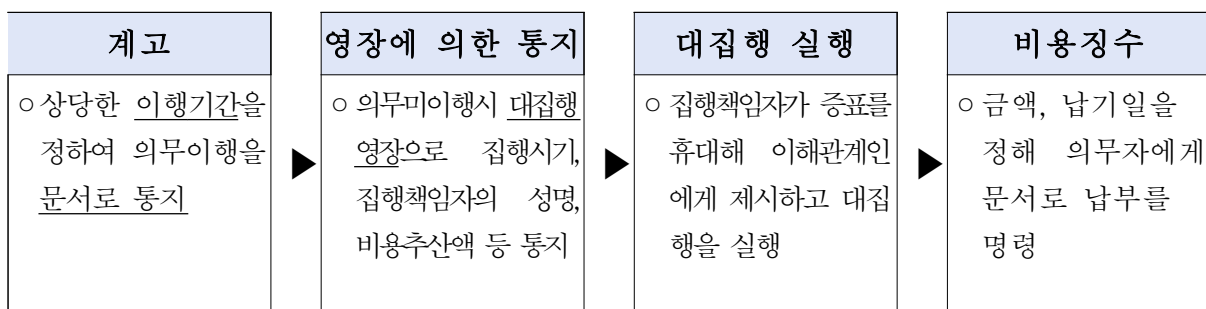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행 규정을 통해 방치선박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항만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83조에 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이전 제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처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치선박의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리청의 방치선박에 대한 이행력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행정대집행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대집행의 절차, 실행방식, 비용징수 및 불복수단이 규정되어 있으나, 대체적 작위의무 여부 및 대집행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대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개정안의 대집행 규정은 일반적인 대집행 규정 방식을 따르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행정대집행의 절차 >



- 개정안 제83조제3항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하여 “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¹¹⁾
- 해양수산부는 장기미운항선박의 항만시설 무단점용을 해소하도록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국유재산법」¹²⁾에서도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의 무단 사용에 대해 개별법에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11) [행정대집행 유사 입법례]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12)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